

# 일본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인 교원임용

서용달

## 1. 들어가며-일본대학의 국제화 동향

‘일본의 국공립대학에는 외국인으로 정규 교수회 회원인 조교수·교수는 한 사람도 없다. 이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고 교육한다고 자칭하는 대학으로서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까.’<sup>1)</sup>

이러한 이상한 사태는 먼 옛날 일이 아니라, 불과 20년 정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틀림없는 실태이다. 국공립대학 뿐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교수회 구성원에 외국인 교원은 거의 없었다. 외국인교원 채용운동을 시작하고 수년,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실현성이 없는 운동이라고 필자를 나무랐다. 예를 들어 일본 국제법학회의 권위자인 교토대학(京都大学)의 고(故) 다오카 료이치(田岡良一) 교수조차도 ‘일본인은 변하지 않을 테니, 당신이 하는 연구에 시간을 들이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운동은 소용돌이치며 확대되어, 5,6년 후에는 ‘전방에 희미한 빛이 느껴지는 지점에 도달’(각주1의 후기)했던 것이다. 이는 1977,8년경의 일이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필자의 바람은 거의 10년 세월을 거쳐 달성되었다. 획득한 국공립대학 ‘외국인 교원임용법’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성과를 여기에서 총괄하고, 아울러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알려진 대로 2004년 4월부터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가 시작되고 국립대학 교수들

1) 日高六郎・徐竜達編(1980) 『大学の国際化と外国人教員』, 第三文明社, まえがき.

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대학의 빅뱅’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과연 새로운 법인이 된 국립대학에서 외국인 교수임용이 진전되어 대학의 국제화가 추진될까? 혹은 일본인의 ‘마음의 벽’에 막혀 후퇴할까? 대학의 장래를 생각하는 일본인은 물론 필자에게도 커다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필자가 40년 전 모모야마가쿠인대학(桃山学院大学)에 취임한 것은 국공립대학의 취직 차별 때문이기도 했다. 이제 그때의 차별을 돌아보며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전기였다고 통감하는 이유는, 차별극복을 위한 시민운동에서 많은 일본의 석학과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의 인생을 크게 운택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필자가 드물게 차별을 전향적으로 극복했던 것이고, 차별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철폐해야 할 것이다.

정주(定住)외국인의 대학교원 임용운동의 효시는 고 우케다 신키치(受田新吉)의원의 소개로 1975년 10월 2일 필자가 고 나가이 미치오(永井道雄)문부대신과 회견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일 문부성에 제출한 ‘국공립대학의 아시아인 전임교원채용 등에 관한 요청서’의 전문(前文)을 생략한 주요 문항은 다음과 같다<sup>2)</sup>.

1. 국공립대학의 전임교원에 아시아인을 채용하도록 특별조치를 강구해 달라. 또한 사실상, 전임교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조수 등의 실태를 조사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될 수 있는 한 그들을 전임강사 이상으로 등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국공립대학의 아시아인 교원채용의 촉진)
2.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다른 아시아인 전임교원의 인건비, 연구비 등의 전액조성책을 강구해 달라.(사립대학의 아시아인 교원채용의 촉진)
3. 한국·조선학과의 설치, 한국·조선어의 제2외국어 가입 및 관계강좌의 개설에 수반 되는 도서비, 인건비 등의 대폭적인 조성책을 강구해 달라. (아시아 관계의 강좌개설 촉진)

이러한 ‘요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필자는 일본사학진흥재단(日本私学振興財団)의 도쿄야마 쓰네사부로(時子山常三郎)이사장과 회견하고 ‘요청서’의 제2항

2) 日高六郎・徐龍達編、前掲書、288~289頁.

및 제3항에 담긴 사립대학특별조성을 요청해서 예산을 획득하게 되었다. 외국인 교원채용에 수반되는 인건비 조성, 아시아관계 강좌의 개설, 유학생 교육 등에 대한 특별조성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수 백 억 엔에 달하고 있다.

그 후 국립대학협회(=국대협), 공립대학협회(=공대협), 일본학술회의 등의 운동이 확대되었다<sup>3)</sup>. 특별해야할 것은 히다가 로쿠로(日高六郎), 이이누마 지로(飯沼二郎) 두 교수가 대표가 되어 1977년 9월 ‘정주외국인(permanent alien residents)의 대학교원임용을 촉진하는 모임’을 발족하였는데, 이들이 우리 운동을 지원했다는 것은 그 의의가 상당히 크다.

필자가 정주외국인 관련으로 대학의 국제화를 최초로 언급한 것은 1976년 연하장의 ‘국공립대학과 아시아인교원’이었다. 즉 ‘일본의 국공립대학’에는 교환교수 등을 제외하고 보통의 전임교원으로서 아시아인은 한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공립대학에는 현재 문부기관(文部技官)으로서 다른 국적을 가진 아시아인 조수(국가공무원)가 상당히 채용되어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를 들어 아무리 유능하고 또 대학에 자리가 있어도 전임강사나 조교수로는 승진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메이지시대부터의 좋지 않은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 것 (나가이 미치오 문부대신의 담화) 같습니다.

‘학문의 세계에 국경은 없다고 하는 오늘날, 일본이 이제까지의 구미에 편중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아시아에서의 진정한 선린우호관계를 세운다는 의미에서도 아시아인의 국공립대학교수의 길이 열릴 것을 요망합니다. 『재일한국·조선인 대학교원간담회(在日韓国・朝鮮人大学教員懇談会)』(=「대학교원간(大学教員懇)」)는 문부성, 국립대학협회 및 공립대학협회에 이를 요청하고 더욱이 일본학술회의 등에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1976년 새해아침)

이처럼 외국인교원 임용운동과 함께 우리들은 일본학술회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 또 같은 연구자로서의 시민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1977년 3월 일본학술회의의 회원이었던 고 우치다 조키치(内

3) 徐龍達編(1993)『国公立大学外国人教員任用の現状と課題』, 徐龍達先生還暦記念委員会編『アジア市民と韓朝鮮人』日本評論社, 488~491頁.

田穰吉, 제3부장)와 고 하자마 겐조(狹間源三, 제3부), 또 이시모토 야스오(石本泰雄, 제2부)와 가이 미치타로(甲斐道太郎, 제2부)교수의 소개로 ‘정주의국인 과학자의 처우개선(=외국인 과학자의 시민권)에 관한 요망서’를 당시의 오치 유이치(越智勇一)회장에게 제출한 것이다<sup>4)</sup>.

이러한 ‘대학교원간’의 대표로서 당시의 나가이 미치오 문부대신 외에 여러 기관과 교섭한지 8년, 1982년 8월 20일 국공립대학 ‘외국인 교원임용법’, 정식 명칭으로는 ‘국립 혹은 공립대학에서의 외국인 교원임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획득했다<sup>5)</sup>.

본고에서는 ‘외국인 교원임용법’을 획득할 당시의 사정과 채용 실태를 회고하고 임용운동을 시작한지 32년이 지난 지금, 최신의 외국인 교원임용의 실적을 총괄함과 동시에,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외국인교원에 관한 문부과학성의 통계는 본고의 집계로 일단락 지었기 때문에 문부과학성에 의한 앞으로의 조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2. 초기 채용의 국공립대학 외국인교원

‘외국인 교원임용법’을 획득함에 따라 가장 처음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토대학 문학부의 고닛키씨이다. 그는 짧은 임기조건 때문에 곧 퇴직해서 영국으로 돌아가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또한 영국인 케네스 라도르씨도 국립민족학 박물관에 채용되었으나, 결국 국제연합의 연구기관으로 전임되었다.

또한, 한조선인의 국립대학의 채용 제1호는 1984년 2월에 발령된 시가의과대

4) 日高六郎・徐龍達編, 前掲書, 291~293頁に要望書掲載.

5) 그 사이의 일어난 자세한 일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① 徐龍達(2003) 『国立大学外国人教員任用の現状と展望』, 徐龍達編著 『21世紀韓朝鮮人の共生ビジョン—中央アジア・ロシア・日本の韓朝鮮人問題—』(權菴・徐龍達先生古稀記念論集), 日本評論社, 283~307頁.

② 徐龍達(2000) 『外国人教員任用運動からみた共生社会への展望』, 徐龍達・遠山淳・橋内武編著 『多文化共生社会への展望』日本評論社, 220~245頁.

③ 徐龍達(2003) 『外国人教員任用に関する運動日誌』, 徐編 『ロシアの韓朝鮮人問題と日本』, 國際在日韓国朝鮮人研究会, 11月, 87~95頁. 日高・徐編(1980), 前掲書(絶版), 330~347頁로부터 전재.

학(滋賀医科大学)의 박표씨와 오사카대학(大阪大学)의 김재만씨이다. 공립대학에서는 오사카시립대학(大阪市立大学)교수 김영호씨(현 고려대학교수)가 85년 4월에 조교수로 발령 받았고, 국립대학교수로서 도쿄대학 경제학부의 안병직씨(전 서울대학교수)가 86년 3월 발령받은 것은 오래된 사례이다. 그러나 중국인 채용 제1호는 83년 4월 발령받은 주달생씨로, 한조선인의 채용보다 일렀다. 주씨는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조교수로 채용되었다가 후에 교수로 승진, 정년퇴직하여 명예교수가 되었다<sup>6)</sup>.

‘외국인 교원임용법’이 성립된 후 3년 동안 채용되어 재직 중이었던 교원 32명의 실태는 히로시마대학(広島大学)의 『대학연구노트(大学研究ノート)』의 줄고를 참조하기 바란다<sup>7)</sup>. 당시 32명의 임기 중에서 임기가 없는 경우(無任期)는 불과 3명 (도쿄대학 법학부와 이학부 그리고 규슈대학(九州大学)교양부)에 불과하고 임기 2년 이하가 4명, 3년이 18명, 5년이 5명, 8년이 2명이었다. 임기가 3년 이하인 교원이 68.8%나 점하고 있었던 이유는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외국인교원에 대한 엄격한 차별행정이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교수회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이전부터 외국인교원이었던 경우는 줄고의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7항의 개인적 기초에서 맺어진 1년간의 ‘근무계약’에 의한 외국인 교원제도(전임대우 교사와 비상근 강사)는 일반직이나 특별직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국가공무원인데, 이는 그대로 존속되었다. (이전부터 채용되어 있었던 오사카외대(大阪外大)나 도쿄외대(東京外大)의 외국인교원들이 그 주요 경우이다.)

이들 외국인 교사나 외국인 강사의 경우, 우리들의 임용운동이 개시된 73년 경부터 83년까지 10년 동안 외국인 교사가 150명에서 311명으로 배로 늘어나고, 외국인 강사도 307명에서 432명으로 큰 폭으로 증원되었다<sup>8)</sup>. 이들 교원들

6) 周達生(2003) 「在日中国人からの一言」、徐編 『ロシアの韓朝鮮人問題と日本』, 前掲書、80頁를 참조. 여기에서 주씨는 「외국인 교원임용법」이 재일한조선인의 오랜 세월에 걸친 노력의 결정이라고 슬회하고 있다.

7) 徐龍達(1986) 「大学の国際化と『外国人教員任用法』」, 『大学研究ノート』(広島大学大学教育研究センター発行)第67号, 8月, 87~95頁参照(85年度センター研究員集会における徐の報告論文)

8) 徐龍達(1984) 「外国人教員任用法の機能と課題」, 『桃山学院大学経済経営論集』第26卷 第2号,

의 경우를 보아도, ‘외국인 교원임용법’을 기반으로 하여 조교수 이상으로의 임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그러한 낭보가 있는 반면, 1년 계약을 기화로 외국인 전임교사 8명을 계약갱신하지 않고 잡자기 해고하여 재판에 회부된 쓰쿠바대학(筑波大学)의 슬픈 사례도 있다<sup>9)</sup>. 또한 쓰쿠바대학의 외국인교사였던 강동진교수는 ‘외국인 교원임용법’에 의해 정식교수로 임용한다고 하는 관리직의 약속이 백지화되자, 이를 재판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판결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서거했다는 비극도 아직 기억에 새롭다. 같은 종류의 근무계약 해지의 경우로서 와카야마대학(和歌山大学)의 제러드교수 사건 등<sup>10)</sup>이 있고, 최근에는 구마모토현립대학(熊本県立大学)에서 ‘전임교원’(full time faculty member)계약을 한 와진트교수 등 4명이 해고되어 재소하였는데, 필자도 증인으로 선 바 있다<sup>11)</sup>. 이러한 종류의 사례는 끊임없이 많다.

어찌되었든, ‘외국인 교원임용법’을 시행한 이래로 외국인임용은 일보 전진했다. 공대협 기본문제위원회(公大協基本問題委員会)의 발표인 「외국인 교원문제에 대해서」<sup>12)</sup>나 일본학술회의의 견해에서는, 구법령 아래에서도 외국인 교원을 채용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들도 그러한 견지에 섰으나, 구체적으로 대학인의 체질이 개방적으로 되지 않는 한, 자발적인 임용은 바랄 수 없고 법률의 힘과 국가권력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었던 이러한 과정은 일본 ‘대학의 자치’의 한계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대협이 세 번에 걸친 우리 정주의 국민의 주장을 전향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은 대학의 국제화는 물론이거니와 진정한 대학의 자치에 있어서 통탄할 일이었다. 이러한 나쁜 체질을 오늘날까지 끌고 와서 어쩔 수 없이 독립행정법인화(獨立行政法人化)시켰다고도 말할 수 있다.

10월, 61~64頁.

9) 沢田マルガレーテ(1985) 「退歩した国際性—筑波大学の場合」, 『中央公論』8月号, 100~107頁.

10) 田中宏(1980) 「大学は国際化の扉を開きうるか」, 日高・徐編, 前掲書, 73頁이하 참조. アイヴァン・ホール(1995) 「日本の国立大学にあるアパルトヘイト—使い捨てられる外国人教師—」, 『Ronza』5月号, 50頁이하 참조.

11) 『朝日新聞』熊本版(1998) 「徐教授招きシンポ」, 『熊本日々新聞』(1998) 「外国人教員待遇改善を」, 둘 모두 12월 13일자. 熊本県立大学外国人教員を守る会(1998, 12월) 『大学の開国を問う』(パンフレット), 北九州ユニオン.

12) 公立大学協会基本問題委員会(1979) 「外国人教員問題について」5월, 日高・徐・前掲書, 308~311頁를 참조.

여기에서 당시의 자료로서 국립대학의 외국인 교원임용의 개황을 보도록 하자. 전계의 줄고에는 86년 3월 1일 현재 현직 32명을 소개하였으나, 이미 임기 완료 등의 이유로 퇴직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제까지 약 40명이 임용되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 14명, 한조선 6명, 서독4명, 영국과 중국 각2명, 캐나다, 이란, 체코, 인도 각1명이다. 미국 국적자 14명에는 일본계 5명이 포함되어 있고 캐나다 국적의 일본계를 합하면 일본계는 6명이었다. 국제화 초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나, 장기적으로는 일본계인의 비율은 적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줄고에서 알 수 있듯이, 도쿄대학과 규슈대학에서 별도의 임기조건이 없는 세 건의 임용사례는 일본인 교원과 완전히 평등하게 임용된 모범적인 사례이다.

다음은 국립대학에서 외국인교원의 임용상황에 대해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당시 문부성이나 공대협에서도 국립대학의 임용상황에 대해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가 1986년 5월 현재 임의로 조사한 7명에는 약간의 조사누락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임기 없는 4명의 사례에 대해서이다. 이들은 ‘외국인 교원임용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임용된 북규슈대학(北九州大学)과 도리쓰상과단대(都立商科短大)의 2명과 ‘외국인 교원임용법’이 시행된 이후라도 이 법에 의거하지 않고 대학이 독자적으로 임용한 고베상과대학(神戸商科大学)의 1명과, 임용법에 의해 임용된 오사카시립대학(大阪私立大学)의 1명으로 총 4건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교원임용법’에 의한 임용사례가 대학인의 폐쇄적인 법령해석에 의해 임기를 부여하는 데 반해, 이 법에 의거하지 않은 임용사례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연구자와 대학의 자치를 위해 얼마나 바람직한 방법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임용법에 좌우되는 대학인에게 흔히 있는 ‘마음의 벽’이 철거되길 바란다.

이러한 임용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한조선인들의 시민운동에 힘입은 바 크다. 우리들은 세계인권선언 30주년인 78년 12월 10일에 도쿄에서 ‘정주외국인의 국공립대학 교원임용문제’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외국인교원의 채용을 저해해 온 교수들의 체질개선을 호소하였다. 당시 심포지엄을 추진한 발기인은 이이누마 지로(飯沼二郎), 우부카타 나오키치(幼方直吉), 오타 다카시(大田堯), 세키

히로하루(関寛治), 누마타 이네지로(沼田稻次郎), 하타다 다카시(旗田巍), 히다카 로쿠로(日高六郎), 모리카와 고쿄(森川晃卿), 서용달 등이었다.

이 운동의 주안은 인사원(人事院)의 견해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현행법령에서는 (외국인을) 임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인사원의 견해’<sup>13)</sup>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온 대다수 대학교수의 체질이 정주외국인 연구자의 인권을 심하게 침식시켜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진정한 국제교류와 국제인 교육을 위해서 교수들의 이러한 체질에 대한 현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통감하는 요즘이다.(1979년 연하장)<sup>14)</sup>

정주외국인의 공무취임권(公務就任權)을 제약해 온 ‘당연한 법리’(내각법제국(内閣法制局)의 견해)는 그 후 시민운동의 발전에 대응해서 탄생한 지방자치체에서의 새로운 법해석에 의해 사실상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6년의 ‘가와사키 방식(川崎方式)’(가와사키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면 소방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전직종의 80%), 판례 또한 ‘가와사키 방식’을 승인하고 있기<sup>15)</sup> 때문이다.

한편 국공립대학교수에 외국인이 임용되지 않은 것은, 대학인이 법률이상으로 강제력을 발휘한 ‘당연한 법리’에 유린되어 대학이 ‘공권력의 행사’나 ‘국가의 식의 형성’에 참여하는 기관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sup>16)</sup>. 대학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인사가 법률이외의 견해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일본의 ‘법치주의’에 문제가 있음과 동시에 일본인의 논리성에 약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13) 1953년 6월 29일의 인사원 사무총장의 법률이 아닌 견해를 가리킨다. ‘공무원에 관한 당연한 법리로써 공권력의 행사 혹은 국가의사 형성의 계획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된다.’(人事院任用局監修, 『任免関係法令集』1978年版, 241頁.)

14) 徐龍達(2003) 「大学教授の体質改善」 『奈良新聞』4月16日付 文化欄을 참조

15) 岡崎勝彦(2001) 「地方参政権の本質と被選挙権—住民自治に即して, 徐竜達編 『定住外国人の被選挙権への展望』 『国際韓朝研』, 5月, 18頁. 同稿(2001) 「定住外国人と地方被選挙権保障の法理」 『法律時報』第73卷 第10号, 9月, 85~86頁.

16) 徐龍達(2001) 「定住外国人の参政権と『アジア市民』社会—「国民」と「住民」の正しい解釈を求めて, 『法律時報』第73卷 第10号, 9月, 78~79頁.

위 글을 가필하여 徐編著(2003) 『21世紀韓朝鮮人の共生ビジョン』日本評論社, 137~152頁에 게재하였다.



### 3. 공무원으로서의 외국인교원의 최종실태

외국인교원 임용운동을 시작한지 32년, 1982년 ‘외국인교원 임용법’을 획득하고 22년이 지났다. 그 채용실적을 여기에 소개해 두고자 한다.

매년 문부과학성과 국립대학협회는 우리들의 운동의 성과인 각 대학의 외국인 교원임용에 대한 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최신 2003년도 집계를 소개하고 참고 하고자 한다.

우선 <표1>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조수를 제외한 외국인교원의 총수는 717명, 그중 교수 135명, 조교수 474명, 전임강사108명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①중국·대만246명 ②한국·조선 153명 ③미국 110명 ④영국 39명 ⑤독일 34명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조수 490명(그 중 한국·조선인이 115명)을 더해 1,207명이 국가공무원(일반직)으로 임용되었다. 그 중 아시아계가 60%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국립대학 외국인교원 임용을 직위별로 보면 교수직에는 ①미국 36명 ②한국·조선 31명 ③중국·대만 26명 ④영국 9명 ⑤호주 7명이다. 또 조교수직으로는 ①중국·대만 195명 ②한국·조선 85명 ③미국 54명 ④독일 27명 ⑤영국 25명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교수직의 선두에 중국·대만인이 올라가는 것은 필연의 사실이다.

또한 <표2>는 각 대학별 외국인교원의 채용인원을 보여주고 있다. 본 표를 토대로 외국인교원의 대학별 채용순위를 보면 ①도쿄대 49명 ②도호쿠대(東北大) 48명 ③규슈대 33명 ④쓰쿠바대 31명 ⑤교토대 22명 ⑥고베대 21명 ⑦오사카대와 히로시마대가 각각 20명이다.

이들 상위 8개 대학에서 외국인교원의 법적 지위의 확보, 즉 일본인과 평등한 ‘무임기 채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340명 중 ①도쿄대 36명 ②쓰쿠바대 26명 ③도호쿠대 20명 ④교토대와 고베대가 각각 18명 ⑤오사카대 17명 ⑥히로시마대 8명 ⑦규슈대가 드물게도 1명만이 있다. 규슈대는 볼프강(Michel Wolfgang) 조교수를 국립대학에서 가장 처음으로 무임기채용을 했다는 실적을 자부하나, 이는 후술하겠지만, ‘대학교원임용법’(1997년 제정)의 악영향을 받았다고 추측된다.

〈표1〉 국립대학 등 외국인교원 국적별 현황

지역	국명	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합계
아시아	인도	4	2		6
	인도네시아		1		1
	베트남	1	1	1	3
	싱가포르		3		3
	스리랑카	1	4		5
	타이	2	2	1	5
	한조선	31	85	37	153
	중화인민공화국	25	190	23	238
	네팔		1		1
	방글라데시		3		3
	필리핀		3		3
	말레이시아		1		1
	미얀마			1	1
	대만	1	5	2	8
북미국	미국	36	54	20	110
	캐나다	1	11	4	16
중남미국	아르헨티나			1	1
	칠레	1			1
	브라질		1	2	3
유럽 (NIS국가포함)	아이슬란드		1		1
	아일랜드		1		1
	이탈리아	1	2		3
	우즈베키스탄		1		1
	영국	9	25	5	39
	에스토니아		1		1
	오스트리아	1			1
	네덜란드	1	3		4
	스페인			1	1
	슬로바키아		1		1
	독일	5	27	2	34
	핀란드		1		1
	프랑스	1	11		12
	불가리아		2	1	3
	벨기에		2		2
	폴란드		1		1
	포르투갈		1	1	2
	유고슬라비아	1			1
	리투아니아	1			1
	루마니아		1		1
러시아	3	7		10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7	11	1	19
	뉴질랜드		4	2	6
중동	이란	1	1	1	3
아프리카	이집트		1	1	2
	가나		1		1
	콩고민주공화국	1			1
	튀니지		1		1
	남아프리카			1	1
합계		135	474	108	717

○ 한국과 조선(5명)을 합산하여 「한조선」(통일용어)으로 하였다(서용달).

〈표2〉 국립대학 등 외국인교원기관별 현황(2003년7월1일 현재 문부과학성조사)

(2003년 7월1일 현재, 문부과학성조사)

No.	기관명	합계	(여성)
1	홋카이도(北海道)대학	18	(1)
2	홋카이도교육대학	2	(0)
3	무로란(室蘭)공업대학	2	(0)
4	오타루(小樽)상과대학	7	(2)
5	오비히로(帯広)축산대학	3	(0)
6	아사히가와(旭川)의과대학	0	(0)
7	기타미(北見)공업대학	1	(0)
8	히로사키(弘前)대학	11	(2)
9	이와테(岩手)대학	3	(1)
10	도오호쿠(東北)대학	48	(5)
11	미야기(宮城)교육대학	1	(0)
12	아키타(秋田)대학	2	(0)
13	야마가타(山形)대학	6	(2)
14	후쿠시마(福島)대학	2	(1)
15	이바라기(茨城)대학	13	(3)
16	쥬쿠바(筑波)대학	31	(5)
17	우즈노미야(宇都宮)대학	4	(2)
18	군마(群馬)대학	2	(0)
19	사이타마(埼玉)대학	6	(1)
20	치바(千葉)대학	13	(0)
21	도쿄(東京)대학	49	(5)
22	도쿄외국어대학	1	(1)
23	도쿄외국어대학	10	(1)
24	도쿄학예대학	3	(2)
25	도쿄농공대학	1	(0)
26	도쿄예술대학	1	(0)
27	도쿄공업대학	10	(1)
28	도쿄상선대학	0	(0)
29	도쿄수산대학	3	(0)
30	오차노미즈(お茶の水)대학	3	(2)
31	전기통신대학	6	(1)
32	히토쓰바시(一ツ橋)대학	9	(3)
33	요코하마(横浜)국립대학	10	(1)
34	니가타(新潟)대학	11	(4)
35	나가오카(長岡)기술과학대학	5	(0)
36	조에쓰(上越)교육대학	1	(1)
37	도야마(富山)대학	5	(2)
38	도야마의과약대학	0	(0)
39	가나자와(金沢)대학	13	(3)
40	후쿠이(福井)대학	10	(2)
41	후쿠이의과대학	1	(0)
42	야마나시(山梨)대학	4	(1)
43	신슈(信州)대학	12	(3)
44	기후(岐阜)대학	8	(1)
45	시즈오카(静岡)대학	11	(2)
46	히마리쥬(浜松)의과대학	0	(0)
47	니고야(名古屋)대학	12	(3)
48	아이치(愛知)교육대학	6	(1)
49	니고야공업대학	6	(1)
50	도요하시(豊橋)기술과학대학	3	(0)
51	미에(三重)대학	8	(1)
52	시가(滋賀)대학	2	(0)
53	시가의과대학	2	(1)
54	교토(京都)대학	22	(3)
55	교토교육대학	0	(0)
56	교토공예섬유대학	7	(1)

No.	기관명	합계	(여성)
57	오사카(大阪)대학	20	(3)
58	오사카외국어대학	4	(3)
59	오사카교육대학	3	(1)
60	효고(兵庫)교육대학	0	(0)
61	고베(神戸)대학	21	(4)
62	고베상선대학	1	(0)
63	나라(奈良)교육대학	0	(0)
64	나라여자대학	0	(0)
65	와카야마(和歌山)대학	5	(2)
66	돗토리(鳥取)대학	4	(1)
67	시마네(島根)대학	6	(1)
68	시마네의과대학	0	(0)
69	오카야마(岡山)대학	16	(4)
70	히로시마(広島)대학	20	(3)
71	야마구치(山口)대학	18	(3)
72	도쿠시마(徳島)대학	1	(0)
73	나루토(鳴門)교육대학	2	(2)
74	가가와(香川)대학	11	(1)
75	가가와의과대학	1	(0)
76	에히메(愛媛)대학	17	(5)
77	고치(高知)대학	7	(2)
78	고치의과대학	2	(1)
79	후쿠오카(福岡)교육대학	1	(0)
80	규슈(九州)대학	33	(3)
81	규슈예술공과대학	1	(0)
82	규슈공업대학	7	(1)
83	사가(佐賀)대학	12	(2)
84	사가의과대학	0	(0)
85	나가사키(長崎)대학	13	(3)
86	구마모토(熊本)대학	4	(3)
87	오이타(大分)대학	3	(1)
88	오이타의과대학	0	(0)
89	미야자키(宮崎)대학	3	(1)
90	미야자키의과대학	0	(0)
91	가고시마(鹿児島)대학	12	(3)
92	가고시마교육대학	0	(0)
93	류큐(琉球)대학	9	(1)
94	정책연구대학원대학	1	(0)
95	호쿠리쿠(北陸)선단과학기술대학원대학	4	(0)
96	나라선단과학기술대학원대학	0	(0)
97	총합연구대학원대학	0	(0)
98	쓰쿠바기술단지대학	2	(0)
99	다카오카(高岡)단기대학	3	(0)
100	우주과학연구소	0	(0)
101	통계수리연구소	0	(0)
102	국제일본문화센터	5	(1)
103	핵융합과학연구소	1	(0)
104	오카자키(岡崎)국립공동연구기구	1	(0)
105	고에너지기술연구소	4	(0)
106	국립정보학연구소	5	(2)
107	국립민족학박물관	2	(1)
108	미디어교육개발센터	2	(2)
합계		717	(132)

게다가 2002년도분의 국립대학 외국인교원 집계에서 여성임용이 처음으로 대학별로 명시되었다. 같은 해 외국인교원 693명 중, 여성은 59대학에서 125명 (18.0%)이 임용되었으나, 2003년에는 717인 중 132명 (18.4%)으로 약간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대학별로는 ①도호쿠대, 쓰쿠바, 도쿄대, 아이치대(愛知大)가 각각 5명이고 ⑤니이가타대(新潟大), 고베대, 오카야마대(岡山大)가 각각 4명, ⑧히토쓰바시대(一ツ橋大) 외에 13개 대학에서 3명이 채용되었고 지금은 채용 인원은 적지만, 앞으로의 임용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표3>은 공립대학협회의 최신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 대학별 임용상황을 집계한 것이다. 2002년 채용인원 264명에 비해 약간 늘어난 276명인데, 대학별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아이즈대(会津大)가 발군으로 38명 ②북규슈대 19명 ③오사카시립대 15명 ④아키다켄대(秋田県大)14명, 그리고 ⑤이와테켄대(岩手県大)와 오사카후대(大阪府大)가 각각 13명씩이다.

공립대학에서 외국인교원의 무임기 채용은, 전체 276명 중 184명으로 66.7%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국립대학이 47.4%인 것에 비해 약간 양호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의 채용이 264명 중 무임기가 174명인 65.9%에 비하면 불과 0.8%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립대학이 다음 장에서 다룰 ‘대학교원임기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중국·대만인, 한조선인 등 아시아인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선린우호의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립대학이 자주적으로 임기를 없애고 외국인 연구자를 평등하게 처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다.

#### 4. 대학교원 ‘임기’제의 현상과 과제

2004년 4월부터 국립대학법인화가 성립되면서 국립대학은 나라의 기관이 아니고, 교직원도 공무원이 아니게 되었다. 72년부터 정주외국인의 국공립대학 교원임용운동을 진행시켜 온 당사자로서 ‘국적의 벽’이 제거되어 외국인 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환영하고 싶다. 그러나 또 하나 차별적인 ‘마음의 벽’이 없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는 일본인의 사고방식과 국제

성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일단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기’제에 대해 언급해 두고 싶다.

외국인교원에 대한 불공평한 ‘임기’행정은 일본인에게도 될 수 있는 불똥의 전례가 될 것이라는 점은 전부터 필자가 경고한대로의 추이이다. 자민당 문교족(文教族)의 동향을 관찰하고 있었던 정주외국인측은, 일찍부터 외국인교원에 대한 임기반대의 문제에 대해 공동 투쟁태세를 기대했으나, 일본인의 대세가 이에 대해 거의 무관심해서 실현되지 못했다.

이리하여 1997년 6월 일본인 교원전체에 대한 ‘대학교원임기법(大学教員任期法)’(정식으로 ‘대학교원 등의 임기에 관한 법률’)이 성립·공포되었다. 일본인 교수들은 대체로 임기반대의 논조였으나, 드디어 ‘대학교원임기법’의 임기제가 대학 측의 선택에 맡겨졌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하게 되었다. 국회의 중의원과 참의원의 ‘부대결의(附帶決議)’에 ‘임기제의 도입으로 인해 학문의 자유 및 대학자치의 존중을 담보로 하고 있는 교원 신분보장의 정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함과 동시에, 함부로 임기제의 도입을 해당대학의 교육연구지원의 조건으로 하는 등의 일체의 간섭은 하지 않을 것’이 명시되었다. 외부의 장벽은 이미 제거되었고 서서히 대학당국에게 임기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의 경우, ‘재정유도(財政誘導)’라는 수단으로 공략 당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출산을 감소의 영향으로 2007년부터 대학입학지원자가 모두 입학하는 시대가 되었고 학생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투쟁전이 예상된다. 그 때문에 경쟁원리의 도입과 병행되는 대학원이나 학부신설에 대한 규제완화, 주식회사립대학(株式会社立大学) 등의 다양화에 수반하여 대학교육의 목적도 부득이하게 확산되어, 운영이 나빠져서 적자구조에 돌입하게 되는 등, 재정기반이 약한 대학의 도산사례도 어렵지 않게 현재화될 것이다.

이러한 ‘선택적 임기제’는 1996년 10월에 제출된 대학심의회회의 답변에서 ‘대학교원의 임기제에 대해-대학에서의 교육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에 의해 구체화되었다<sup>17)</sup>. 과연 임기제에 의해 교육연구의 ‘활성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 그 이

17) 1996년 10월 26일자 「朝日」, 「毎日」, 「日経」등의 각 신문은 임기제도운용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적평가의 어려움, 신분보장대책, 교육·연구의 활성화 방책 등의 문제점을 논평하

전에 ‘활성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대학교원의 ‘유동화’는 무엇인가. 등 논의해야 할 과제는 많다. 적어도 일본인의 임기제와 외국인의 ‘임기제’의 차이점이라든가, 왜 외국인에게만 선행해서 ‘임기’제를 도입 했는가 등의 의문은 많다.

필자는 우선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시대에서 학술적 국제교류뿐 아니라, 민체 외교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교원의 실정을 일본인이 확실히 파악한 후에 ‘외국인교원에게만 임기를 강요하는 국립대학의 임기규칙을 도쿄대학의 규칙을 모범으로 하여 개정하고, 일본인과 같은 토양으로 돌아가 임기문제를 재검토하는 등의 공평한 조치를 호소했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생각건대 외국인에게만 임기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국립대학 등의 차별적인 체질은 선진국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고, 구제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의 ‘활성화’와 ‘임기제’는 표리일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학운영의 활성화와 연구에서의 활성화를 반드시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할 수 없다.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서의 평가는 어려워서 단기적인 임기 내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일본사회 전체의 임기제=강제적인 노동시장의 유동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인 교원평가의 ‘불공평성’이나 ‘인사정책’ 하나를 보더라도 연구직만 임기제에 의한 유동화가 잘 가능할 것이라는 보장은 지금은 찾아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교원임용운동을 시작한지 31년 ‘외국인 교원임용법’을 획득하고 20년의 단락에 해당하는 것이 2002년이였다. 21년째에 해당하는 국립대학의 외국인 교원집계에 의하면 조수(助手)를 포함해서 1,207명이 채용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계가 전체의 60%이상을 점하고 구미계의 약 36%를 능가하는

---

고 있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가 결정된 후 정부에 의한 대학예산삭감, 대학의 통폐합, 산학공동사업, 대학운영의 합리화 등이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Cf. Suh, Yong-Dal (1998, April 2) ‘Equal footing needed for foreign teachers’, *Asahi Evening News*, Opinion.

18) 徐龍達(1999) 「外国人教員の任期撤廃求む」 『毎日新聞』5月17日付 「オピニオン・ワイド」란. 본고는 다음 영문에도 소개했다.

Suh, Yong-Dal (1999, May 22) ‘Universities should welcome foreigners’, *Mainichi Daily News*, Opinion.

〈표3〉 공립대학 외국인교원 기관별 임용현황 (2003년 5월1일 현재)

(2003년 7월1일 현재, 문부과학성조사)

대학명	교수	특임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수	합계
삿포로이대(札幌医大)	1			1		2
아오모리보건대(青森保健大)	2(2)			3(2)		5(4)
아오모리공립대(青森公立大)	1(1)		2(2)	5(5)		8(8)
이와테현립대(岩手県立大)	4(4)		7(7)	2(2)		13(13)
미야기대(宮城大)	2					2
아키타현립대(秋田県立大)	2		11(2)	1		14(2)
아이즈대(会津大)	9(8)		13(10)	15(11)	1(1)	38(30)
이바라기의료대(茨城医療大)	1(1)			1(1)		2(2)
군마여대(群馬女大)				1		1
미에바시공대(前橋工大)	1(1)		1(1)			2(2)
도쿄도립대(東京都立大)	4(3)		6(5)	1		11(8)
가나가와보대(神奈川保大)	1					1
요코하마시립대(横浜市立大)	3(3)		5(5)		2(2)	10(10)
도야마현립대(富山県立大)			1(1)			1(1)
후쿠이현립대(福井県立大)	5(5)	(안병직)1	2(2)	1(1)		9(8)
쓰루문과대(都留文科大)			1			1
나가노간호대(長野看護大)	1					1
정보과학예술대학원대학			3(3)			3(3)
시즈오카현립대(静岡県立大)			3(3)	1(1)	1(1)	5(5)
아이치현립대(愛知県立大)	1		3		1	5
나고야시립대(名古屋市立大)				1		1
사가현립대(滋賀県立大)	2(2)		1(1)	1		4(3)
교토의대(京都医大)	1					1
교토예술대(京都芸術大)	1		2			3
오사카부립대(大阪府立大)	1		2	2	8(8)	13(8)
오사카여대(大阪女大)	1			1		2
오사카간호대(大阪看護大)	1			1		2
오사카시립대(大阪市立大)	4(3)		6(4)	5(3)		15(10)
나라의대(奈良医大)					4(4)	4(4)
고베상대(神戸商大)	1(1)		1(1)	1(1)	1(1)	4(4)
히메지공대(姫路工大)			3(3)	1(1)		4(4)
고베시립외대(神戸市立外大)	2(2)		7(7)			9(9)
와카야마의대(和歌山医大)						*1(1)
시마네현립대(島根県立大)	2		5	2		9
오카야마현립대(岡山県立大)			2(2)			2(2)
히로시마현립대(広島県立大)			2	1		3
히로시마시립대(広島市立大)	6(6)		4(4)	1(1)		11(11)
야마구치현립대(山口県立大)	3(3)		3(3)	1(1)		7(7)
시모노세키시립대(下関市立大)			1(1)			1(1)
고치여대(高知女大)			1			1
후쿠오카여대(福岡女大)			1			1
후쿠오카현립대(福岡県立大)			1	2		3
북큐슈대(北九州大)	4(4)		11(7)	4		19(11)
오이타간호과학대(大分看護科学大)	1			1		2
나가사키현립대(長崎県立大)	1(1)					12(1)
사볼트대(シーボルト大)	4(4)					4(4)
구마모토현립대(熊本県立大)			5	2		7
미야자키간호대(宮崎看護大)			1(1)			1(1)
미야자키공립대(宮崎公立大)	3(3)		1(1)			4(4)
오кина와에대(沖縄芸大)	3(3)					3(3)
합 계	79(60)	1	118(76)	59(30)	18(17)	276(184)

○ 이 표는 공동협의 조사에 서용달의 조사수치를 합산한 것이다.

○ \*1은 적합명·호칭의 위답 없음. ()안은 무임기교원수

것은 경제활동 뿐 아니라, 학술교류도 ‘아시아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9)</sup>.

한편 공립대학협회의 최신 자료에 의하면 276명의 외국인교원이 임용되고 국공립대학 합계에서는 1,483명에 이른다. 조수를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약 1,500명이 임용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동향이 각 지방자치체의 외국인 공무원채용에 파급된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이제까지 외국인은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당연한 법리’는 사실상 거의 파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외국인 교원임용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훌륭한 인재를 교수 등에 임용하는 것을 인정한 법률이었는데, 그 중 큰 문제는 대학 측에 의한 임기조건부 채용이었다. 공립대학의 33.3%에 비해, 국립대학에서는 약 53%가 임기조건부라는 문제가 남는다. 원래 ‘외국인 교원임용법’에서는 임기를 강제할 수 없고, 문제는 일본인 교수의 ‘마음의 벽’에 있다. 국공립대학이 자주적으로 결정한 외국인만의 차별적인 임기규정을 철폐하고 일본인과 평등한 토양에서 새로운 임기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임기규정의 모범은 도쿄대학이다. ‘외국인 교원임용법’ 제2조에 외국인을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다’고 강조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무임기의 외국인교수가 비교적 많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sup>20)</sup>.

## 5. 결론-외국인교원 1만 명 채용으로 활력과 국제화를

여기에서 국립대학법인의 발족에 당면하여 장래의 전망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원래 대학의 경영은 각 대학의 특색 있는 교육, 양질의 교직원과 학생

19) 徐龍達(2003) 「定住外国人の参政権と『アジア市民』社会」, 徐編著『21世紀韓朝鮮人の共生ビジョン』

前掲書, 144~148頁 참조.

20) 徐龍達(1999) 「外国人教員と日本人教員の任期問題について」 『関西教授会連合』No.97・98号 併合, 국고 조성에 관한 사대교수회 연락협의회(私大教授会連絡協議会) 2월간을 참조.

徐龍達(1984) 「定住外国人教授は任期なしに、模範的な東大の任用規則」 『毎日新聞』2月29日 付夕刊「文化欄」



에게 매력적인 연구교육의 다양성, 경영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높은 견식과 장래를 통찰할 수 있는 선견성을 갖춘 경영자 학장이 바람직하다. 국공립대학 뿐 아니라, 사립대학도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므로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자금뿐 아니라, 지방자치체나 민간기업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개발과 활성화에 의한 자금을 확보할 전략이 전개될 것이다.

대학 개혁에도 경영의 수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환영받는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교육관련 기업이 대학교수와 공동으로 벤처 기업을 만들고 대학에 맞는 교육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도 생겼다<sup>21)</sup>.

이제 나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닛산자동차(주)를 재건한 카를로스 곤(Carlos Ghosn)사장의 수완이다. 국공사립대학도 ‘곤 학장’과 같은 외국인을 맞이해서 활성화해야 하지 않을까? 옛날처럼 학벌, 순혈주의나 국적을 고집하고서는 경영과 인사의 총책임자로서 학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게다가 유능한 ‘외국인교원 1만 명 채용’<sup>22)</sup>이라는 나의 구상은 대학의 활성화는 물론, 일본인의 국제 감각을 높여 일본의 진정한 국제화를 추진하고 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1996년 빈대학의 객원교수로 있을 때, 오스트리아의 정교수의 25%, 객원교수의 54%가 외국이라는 점에 놀랐다. 국적을 초월한 발상으로 인구 800만 명 정도의 작은 나라에서 18명이나 노벨수상자를 낸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다<sup>23)</sup>.

이제 한 가지. 세계인구의 반을 점하는 여성 채용을 늘이는 것이다. 우선 각 대학교원의 30%채용을 목표로 하면 어떨까? 앞서 말한 대로 드물게 문부과학성의 2002년 자료에서는 국립대학의 외국인 여성교원의 임용상황을 처음으로 공표했다. 전임교원은 125명으로 임용전체의 18%였다. 2003년 자료에 의하면 여성교원은 132명으로 약간 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채용이 많은 대학에서

21) 『日本経済新聞』(大阪本社版)2004年9月1日付35面 「VB2社と新会社—大学授業管理システムで」를 참조. 「企業的大学運営とは何か」등 하네다(羽田)교수의 논지도 경정할 가치가 있다.

羽田貴史(2004) 「国立大学法人制度をめぐる論点整理」, 広島大学高等教育研究開発センター編 『大学運営の構造改革』高等教育研究叢書 80, 67~73頁.

22) 徐龍達(2003) 「国立大学にゴーン学長を—外国人教員一万人で活力と国際化」, 『朝日新聞』8月29日付(夕刊)文化欄.

23) 徐龍達(1995) 「オーストラリアが示す国際的の大学への道」 『朝日新聞』7月28日付(夕刊)文化欄. 徐龍達(2003)前掲 『21世紀韓朝鮮人の共生ビジョン』, 635~637頁에 전체.

도 불과 5명으로 도호쿠대, 쓰쿠바대, 도쿄대, 아이치대가 그 경우이다. 이하 니가타대, 고베대, 오카야마대(岡山大) 등이 뒤를 잇고 있으나, 앞으로도 채용이 증가하길 바란다. 유능한 여성 연구자와 경영자가 출현해서 대학개혁을 이루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지난 이야기가 되었으나, 한신 타이거즈가 수위를 독주해서 센트럴리그에서 우승했다. 호시노(星野) 전 감독의 리더십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부진의 구렁텅이에 있었던 팀을 정주외국인이나 일반 외국인선수를 이입시키는 인사를 감행함으로써 우승으로 이끈 경영진도 평가하고 싶다. 대학에도 행동력이 있고 선견성이 있는 ‘곤학장’을 이입한다면 이질적인 발상 아래에서 독창성이 발휘되어 특색 있는 대학으로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일본인은 이미 국적을 고집하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sup>24)</sup>.

(이 논문은 日本 広島大学 高等教育研究開発센터 『大学論集』第35集 2005年3月発行 「日本の大学国際化のための外国人教員の任用」(293-310頁)을 번역한 것이다.)

---

24) 徐龍達(1986) 「『留学生10万人計画』への提言—変えられるか 日本人の文化的性格」 『毎日新聞』12月 19日付 (夕刊)文化欄.

徐竜達(2003) 「外国人教員の任用と大学国際化への課題」 『国際文化論集』, 桃山学院大学総合研究所、第29号、280頁.

# 日本の大学国際化のための外国人教員の任用

ソ ヨンダル  
徐龍達\*

## 1. はじめに—日本の大学国際化への動向

「日本の国公立大学には、外国人で正規の教授会メンバーとなっている助教授・教授は1人もいない。このことは、普遍的真理を追求し教育すると自称する大学としては、まことに不思議なことではあるまいか。」<sup>1)</sup>

この不思議な事態は、遠い昔のことではなく、ほんの20年ほど前の日本の偽らぬ実態なのである。国公立大学のみならず、私立大学にも教授会の構成メンバーに外国人教員はほとんどいなかった。外国人教員の採用運動を始めて数年、多くの人々が、日本では実現性の乏しい運動だと筆者をたしなめたものである。たとえば、日本国際法学会の権威、故・田岡良一京都大学教授さえも、「日本人は変わりっこないんだから、君の研究に時間を費やした方がよい」などと助言されたものである。しかし、運動は大きな渦を巻いて拡大され、5、6年後には「前方にほのかな明かりが感ぜられる地点にたどりついた」(脚注1)のあとがき)のである。それは1977、8年のころであった。

こうして筆者の願望は、後述のようにおよそ10年の歳月を経て達成されることになった。獲得された国公立大学「外国人教員任用法」の現時点における成果をここで総括し、併せて今後の課題を共に考えようとしたのは、周知のように、

---

\* 桃山学院大学名誉教授

2004年4月から国立大学の独立行政法人化が始まり、国立大学教授たちの身分が国家公務員ではなくなったからである。まさしく「大学ビッグバン」の時代が到来したといえよう。

果たして新しい法人としての国立大学で、外国人教授の任用が前進して大学の国際化が推進されるのか、あるいは日本人の「心のかべ」に妨げられて後退するのか、大学の将来を考える日本人はもとより、筆者にとっても大きな関心事であることに変わりはない。

筆者が四十年前に桃山学院大学に就任したのは、国公立大学による就職差別のためでもあった。いまその差別をふりかえてみて、それが人生の転機になったと痛感している。というのは、差別克服のための市民運動で、多くの日本の碩学と交流ができたことから、私の人生に大きな潤いをもたらしたからである。しかしこのことは、差別を前向きに克服した筆者の稀なケースであって、差別は人間を死に至らしめる場合もあるので撤廃すべきである。

定住外国人の大学教員任用運動の嚆矢は、故・受田新吉議員の紹介をえて1975年10月2日、筆者が故・永井道雄文部大臣に会見したことにあるといえる。当日文部省に提出した「国公立大学へのアジア人専任教員採用等に関する要請書」の前文を省略した主文は次のとおりである2)。

- 1) 国公立大学の専任教員にアジア人を採用するよう特別措置を講じて下さい。  
また、事実上、専任教員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研究)助手等の実態を調査してその処遇を改善し、できるかぎり、彼らを専任講師以上に登用しうる方策を講じて下さい(国公立大学へのアジア人教員採用の促進)。
- 2) 私立大学に勤務する他のアジア人専任教員の人件費、研究費等の全額助成策を講じて下さい(私立大学へのアジア人教員採用の促進)。
- 3) 韓国・朝鮮学科の設置、韓国・朝鮮語の第2 外国語への加入、およびその関係講座の開設に伴う図書費、人件費等の大巾助成策を講じて下さい(アジア関係講座の開設促進)。

この「要請書」の提出と同時に、筆者は日本私学振興財団の時子山常三郎理事長らと会見し、「要請書」の第2 項および第3 項に盛り込まれた私立大学特別助成を要請して予算を獲得することになった。外国人教員の採用に伴う人件費助成、

アジア関係講座の開設、留学生教育等への特別助成は今日まで引き継がれており、その予算は数百億円に達している。

その後、国立大学協会(=国大協)、公立大学協会(=公大協)、日本学術会議等への運動が拡大されることになった<sup>3)</sup>。特筆すべきことは、日高六郎、飯沼二郎両教授が代表となって、「定住外国人(permanent alien residents)の大学教員任用を促進する会」が1977年9月に発足し、私たちの運動を支援された意義はきわめて大きい。

筆者が定住外国人関連で大学の国際化にふれた最初は、1976年の年賀状「国公立大学とアジア人教員」であった。すなわち、「日本の国公立大学には、交換教授などを除いて、一般の専任教員としてのアジア人は一人もいないようです。と申しますと正確ではありませんが、国公立大学には現に文部技官としての他国籍のアジア人助手(国家公務員)がかなり採用され、奉職しております。

しかし、彼らはたとえ、どれほど有能であり、かつ大学にポジションがあっても、専任講師や助教授には昇任できない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これはどうやら、明治時代からのよからぬ伝統にもとづくもの(永井道雄元文部大臣談)のようです。

学問の世界に国境はないといわれる今日、日本がこれまでの欧米編重の考え方から脱して、このアジアで真の善隣友好関係をうち立てる意味からも、アジア人の国公立大学教授への道が開かれることを要望します。『在日韓国・朝鮮人大学教員懇談会』(=「大学教員懇」)は文部省、国立大学協会、および公立大学協会に要請し、さらには日本学術会議などにも働きかけることになりました。」(1976年元旦)。

このような外国人教員任用運動とともに、わたしたちは日本学術会議の選挙権と被選挙権についても、同じく研究者としての市民的権利として獲得に乗り出したのである。1977年3月、日本学術会議会員だった故・内田穰吉(第三部長)、同じく故・狭間源三(第三部)、石本泰雄(第二部)、甲斐道太郎(同)教授の紹介をえて、「定住外国人科学者の処遇の改善(=外国人科学者の市民権)に関する要望書」を当時の越智勇一会長に提出したのである<sup>4)</sup>。

こうして「大学教員懇」の代表として筆者らは、当時の永井道雄文部大臣ほか諸機関と交渉すること8年、1982年8月20日、国公立大学「外国人教員任用法」、正

式には「国立又は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を獲得した5)。

本稿においては、「外国人教員任用法」獲得当初の事情と採用の実態をふりかえり、任用運動開始から32年後、最新の外国人教員任用の実績を総括するとともに、今後の展望を試み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国家公務員としての外国人教員に関する文部科学省の統計は、本稿の集計をもってひと区切りをなし、文科省による今後の調査も期待できないことになる。

## 2. 初期採用の国公立大学外国人教員

「外国人教員任用法」の獲得によって、一番最初に採用された教員は京都大学文学部のコーニッキーさんで、彼は短い任期付きのため間もなく退職してイギリスに戻り、のちにケンブリッジ大学の教授になった。また、イギリス人のケネス・ラドルさんも国立民族学博物館に採用されたが、やがて国連の研究機関に転任された。

さらに、韓朝鮮人の国立大学の採用第1号は、1984年2月に発令された滋賀医科大学の朴勺(パク・ピョ)さんと大阪大学の金在万(キム・ジェマン)さんであった。公立大学では、大阪市立大学教授の金泳鎬(キム・ヨンホ)さん(現・高麗大学教授)が85年4月に助教授の発令となっており、国立大学教授としては東京大学経済学部の安秉直(アン・ビョンジク)さん(元ソウル大学教授)が86年3月発令で古い事例である。しかし、中国人の採用第1号は83年4月発令の周達生さんであり、韓朝鮮人の採用より早かった。周さんは国立民族学博物館の助教授に採用されて後に教授に昇任、定年退職されて名誉教授になられた6)。

「外国人教員任用法」の成立後の3年間に採用されて在職中だった教員32人の実態は、広島大学の『大学研究ノート』の拙稿を参照願いたい7)。当時の32人の任期は、無任期は僅か3人(東京大法学部、同理学部と九州大教養部)にすぎず、任期2年以下が4人、3年が18人、5年が5人、8年が2人であった。任期3年以下の

教員が68.8%も占めた理由は、出入国管理法にかかわる行政指導によるものと考えられるが、外国人教員に対する厳しい差別行政であったことに注目すべきである。なお、教授会の構成メンバーでない従来からの外国人教員は拙稿の表には含まれていない。参考までに記すならば、「国家公務員法」第2条第7項の個人的基礎においてなされる1年間の「勤務の契約」による外国人教員制度(専任扱いの教師と非常勤扱いの講師)は、一般職、特別職のいずれにも属さない国家公務員であるが、そのまま存続することになった(従来から採用されている大阪外大や東京外大の外国人教員たちがその主なケースである)。

これらの外国人教師、外国人講師も、われわれの任用運動が開始された73年ごろから83年までの10年間に、外国人教師が150人から311人へと倍増し、外国人講師も307人から432人へと大巾増員となった8)。これらの教員からも、「外国人教員任用法」にもとづく助教授以上への任用が可能で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実際、そのような朗報がある反面、1年契約を奇貨として、外国人専任教師8人を突如として契約更新をせず解雇し、裁判沙汰になった筑波大学の悲しい事例もある9)。同じ筑波大学で、外国人教師だった姜東鎮(カン・トンジン)教授は、「外国人教員任用法」による正式の教授に任用するという管理職の約束を反故にされて裁判沙汰になったが、その判決を待たずに逝去するという悲劇もまだ記憶に新しい。同様な勤務契約の解除では、和歌山大学のジェラード教授事件など10)があり、最近では熊本県立大学で「専任教員」(full time faculty member)契約のワージントン教授ら4人が解雇されて提訴、筆者も証人に立った11)。この種の事例はかなり多く、跡を絶たない。

ともあれ、「外国人教員任用法」の施行以来、外国人任用は一步前進した。公大協基本問題委員会発表の「外国人教員問題について」12)や日本学術会議の見解では、旧法令のもとにおいても外国人教員を採用することができたし、またわれわれもその見地に立つものではあったが、具体的に大学人の体質が開放的にならないかぎり、自発的な任用は望むべくもなく、法律の力、国家権力によって開かざるをえなかった歴史は、日本の「大学の自治」の限界そのものを物語る。と同時に、国大協が再三にわたるわれわれ定住外国人の主張を前向きに取りあげなかったことは、大学の国際化はいうに及ばず、真の大学の自治にとって、大痛恨

事であったといえよう。その悪い体質を今日まで引きずり、独立行政法人化を余儀なくさせたともいえよう。

ここで当時の資料として国立大学外国人教員任用の概況をみることにしよう。前掲の拙稿には86年3月1日現在の現職32人が紹介されているが、すでに任期切れなどによって退職した者を含めれば、それまで約40人が任用されたことになる。国籍別にみれば、アメリカ14人、韓朝鮮6人、西ドイツ4人、イギリスと中国各2人、カナダ、イラン、チェコ、インド各1人となっていた。アメリカ国籍14人には、日系5人が含まれており、カナダ国籍の日系人を加えると、日系人は6人だった。国際化の初期ではやむをえない現象だが、長期的には日系人の比率が少なくなることが望ましい。

また、拙稿で示された東京大学と九州大学の無任期任用事例3件は、日本人教員と全く平等に任用された模範的な事例である。

次に、公立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状況について参考に供したい。公立大学の任用状況について当時は文部省や公大協でも集約しておらず、筆者が1986年5月現在で任意に調査した7人であるため、若干の調査洩れがある。

ここで注目すべきことは、任期なしの4人の事例についてである。これらは、「外国人教員任用法」の施行以前の任用2人(北九州大学と都立商科短大)と、同法施行後であっても同法によらないで大学が独自に任用した1人(神戸商科大学)、および任用法による任用1人(大阪市立大学)の計4件である。一般に任用法による任用事例が、大学人の閉鎖的な法令解釈によって任期をつけているのに対し、同法によらない任用事例では、むしろ外国人研究者と大学の自治にとって、いかに望ましいあり方であるかがわかる。したがって、任用法に左右される大学人にありがちな「心のかべ」の撤去が望まれる。

このような任用はいうまでもなく、韓朝鮮人らの市民運動に負うところが大きい。私たちは、世界人権宣言30周年の78年12月10日に東京(家の光会館)で、「定住外国人の国公立大学教員任用問題」のシンポジウムを主催し、外国人教員の採用を阻害してきた教授たちの体質改善を訴えた。当時のシンポジウムを推進した発起人は飯沼二郎、幼方直吉、大田堯、関寛治、沼田稲次郎、旗田巍、日高六郎、森川晃卿、徐竜達(ソ・ヨンダル)らであった。



その運動の主眼は人事院見解の克服にあった。「現行法令のもとでは(外国人を)任用できないとする人事院見解13)と、それを鵜呑みにしてきた大多数の大学教授の体質が、定住外国人研究者の人権をひどく浸蝕してきたといえましよう。真の国際交流、国際人教育には、教授たちのこのような体質についての現状の認識と改善が必要であると痛感する昨今であります」(1979年徐年賀状)14)。

定住外国人の公務就任権を制約してきた「当然の法理」(内閣法制局の見解)は、その後の市民運動の発展に即応して生まれた地方自治体における新しい法解釈によって、事実上ほぼ破綻することになったといえよう。たとえば、1996年の「川崎方式」(川崎市人事委員会の決定)によれば、消防職を除外した全職種を外国人に開放し(全職種の80%)、判例もまた「川崎方式」を承認している15)からである。

他方、国公立大学教授に外国人が任用されなかったのは、大学人が法律以上に強制力を発揮した「当然の法理」に蹂躪され、大学が「公権力の行使」や「国家意思の形成」に参画する機関だとされたからであった16)。大学自治の根幹をなす人事が、法律以外の見解によって左右されてきた点において、それは日本の「法治主義」に問題があるとともに、日本人の論理性に弱点があるといえないだろうか。

### 3. 公務員としての外国人教員最終の実態

外国人教員任用運動を始めてから32年、1982年に「外国人教員任用法」を獲得して22年が経過した。その採用実績をここに紹介しておきたい。

毎年、文部科学省と公立大学協会から、わたしたちの運動の成果である各大学の外国人教員任用の実態報告がある。その最新の2003年度集計を紹介してご参考に供したい。

まず、第1表によれば、国立大学の助手を除く外国人教員総数は717人で、うち教授135人、助教授474人、講師108人であった。国籍別にみれば、①中国・台湾246人、②韓朝鮮153人、③アメリカ110人、④イギリス39人、⑤ドイツ34人が大勢を占めている。これに助手490人(うち韓朝鮮人115人)を加えた1,207人が国家公務員(一般職)として任用されている。このうち、アジア系が60%以上占めて

いることが注目される。

つぎに、国立大学外国人教員の任用を職位別にみれば、教授職には①アメリカ36人、②韓朝鮮31人、③中国・台湾26人、④イギリス9人、⑤オーストラリア7人である。また、助教授職には①中国・台湾195人、②韓朝鮮85人、③アメリカ54人、④ドイツ27人、⑤イギリス25人となっている。したがって近い将来、教授職のトップに中国・台湾人があがることは必定である。

また、第2表には各大学別の外国人教員の採用人数を示している。本表によって外国人教員の大学別採用順位をみれば、①東京大49人、②東北大48人、③九州大33人、④筑波大31人、⑤京都大22人、⑥神戸大21人、⑦大阪大と広島大が各20人となっている。

これらの上位8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法的地位の確保、つまり日本人と平等な「無任期採用」の点でみれば、340人のうち①東京大36人、②筑波大26人、③東北大20人、④京都大と神戸大が各18人、⑥大阪大17人、⑦広島大8人で、⑧九州大が珍しくも1人だけになっている。九州大ではヴォルフガング(Michel Wolfgang)助教授を国立大学無任期採用の第1号とした実績を誇っていたが、後述の「大学教員任用法」(1997年制定)の悪影響を受けたものと推測される。

さらに、2002年度分の国立大学外国人教員集計から、女性の任用が初めて大学別に明示された。同年は外国人教員693人のうち、女性は59大学等に125人(18.0%)が任用されていたが、2003年は717人中の132人(18.4%)で微増したにすぎない。大学別では①東北大、筑波大、東京大、愛媛大がそれぞれ5人で、⑤新潟大、神戸大、岡山大が各4人、⑧一橋大ほか13大学で3人採用となっており、今のところ採用数は少なくとも、今後の任用増が期待されている。

他方、公立大学協会の最新資料によって、各大学別の任用状況を集計したのが第3表である。2002年の採用人員264人に対して若干増え、276人となっているが、大学別の順位は次のようである。①会津大が抜群で38人、②北九州大19人、③大阪市立大15人、④秋田県大14人、そして⑤岩手県大と大阪府大が13人ずつとなっている。

〈第1表〉 国立大学等外国人教員国籍別現員表

○2003年7月1日現在、文部科学省調査

地域	国名	教授	助教授	講師	合計
アジア	インド	4	2		6
	インドネシア		1		1
	ベトナム	1	1	1	3
	シンガポール		3		3
	スリランカ	1	4		5
	タイ	2	2	1	5
	韓・朝鮮	31	85	37	153
	中華人民共和国	25	190	23	238
	ネパール		1		1
	バングラデシュ		3		3
	フィリピン		3		3
	マレーシア		1		1
	ミャンマー			1	1
	中華民国(台湾)	1	5	2	8
北米	アメリカ合衆国	36	54	20	110
	カナダ	1	11	4	16
中南米	アルゼンチン			1	1
	チリ	1			1
	ブラジル		1	2	3
欧州 (NIS諸国を含む)	アイスランド		1		1
	アイランド		1		1
	イタリア	1	2		3
	ウズベキスタン		1		1
	英国	9	25	5	39
	エストニア		1		1
	オーストラリア	1			1
	オランダ	1	3		4
	スペイン			1	1
	スロバキア		1		1
	ドイツ	5	27	2	34
	フィンランド		1		1
	フランス	1	11		12
	ブルガリア		2	1	3
	ベルギー		2		2
	ポーランド		1		1
	ポルトガル		1	1	2
	ユーゴスラビア	1			1
	リトアニア	1			1
	ルーマニア		1		1
ロシア	3	7		10	
大洋州	オーストラリア	7	11	1	19
	ニュージーランド		4	2	6
中東	イラン	1	1	1	3
アフリカ	エジプト		1	1	2
	ガーナ		1		1
	コンゴ民主共和国	1			1
	チュニジア		1		1
	南アフリカ			1	1
合計		135	474	108	717

○ 本表では韓国と朝鮮(5人)を合算し、「韓・朝鮮」(統一用語)とした。(徐)

〈第2表〉国立大学等外国人教員機関別別員表

(2003年7月1日現在、文部科学省調べ)

No.	機関名	合計	(女性)	No.	機関名	合計	(女性)
1	北海道大学	18	(1)	55	京都教育大学	0	(0)
2	北海道教育大学	2	(0)	56	京都工芸繊維大学	7	(1)
3	室蘭工業大学	2	(0)	57	大阪大学	20	(3)
4	小樽商科大学	7	(2)	58	大阪外国語大学	4	(3)
5	帯広畜産大学	3	(0)	59	大阪教育大学	3	(1)
6	旭川医科大学	0	(0)	60	兵庫教育大学	0	(0)
7	北見工業大学	1	(0)	61	神戸大学	21	(4)
8	広前大学	11	(2)	62	神戸船舶大学	1	(0)
9	岩手大学	3	(1)	63	奈良教育大学	0	(0)
10	東北大学	48	(5)	64	奈良女子大学	0	(0)
11	宮城教育大学	1	(0)	65	和歌山大学	5	(2)
12	秋田大学	2	(0)	66	鳥取大学	4	(1)
13	山形大学	6	(2)	67	鳥根大学	6	(1)
14	福島大学	2	(1)	68	鳥根医科大学	0	(0)
15	茨城大学	13	(3)	69	岡山大学	16	(4)
16	筑波大学	31	(5)	70	広島大学	20	(3)
17	宇都宮大学	4	(2)	71	山口大学	18	(3)
18	群馬大学	2	(0)	72	徳島大学	1	(0)
19	埼玉大学	6	(1)	73	鳴門教育大学	2	(2)
20	千葉大学	13	(0)	74	香川大学	11	(1)
21	東京大学	49	(5)	75	香川医科大学	1	(0)
22	東京歯科大学	1	(1)	76	愛媛大学	17	(5)
23	東京外国語大学	10	(1)	77	高知大学	7	(2)
24	東京学芸大学	3	(2)	78	高知医科大学	2	(1)
25	東京農工大学	1	(0)	79	福岡教育大学	1	(0)
26	東京芸術大学	1	(0)	80	九州大学	33	(3)
27	東京工業大学	10	(1)	81	九州芸術工科大学	1	(0)
28	東京商船大学	0	(0)	82	九州工業大学	7	(1)
29	東京水産大学	3	(0)	83	佐賀大学	12	(2)
30	お茶の水大学	3	(2)	84	佐賀医科大学	0	(0)
31	電気通信大学	6	(1)	85	長崎大学	13	(3)
32	一ツ橋大学	9	(3)	86	熊本大学	4	(3)
33	横浜国立大学	10	(1)	87	大分大学	3	(1)
34	新潟大学	11	(4)	88	大分医科大学	0	(0)
35	長岡技術大学	5	(0)	89	宮崎大学	3	(1)
36	上越教育大学	1	(1)	90	宮崎医科大学	0	(0)
37	富山大学	5	(2)	91	鹿児島大学	12	(3)
38	富山医科薬科大学	0	(0)	92	鹿児島教育大学	0	(0)
39	金沢大学	13	(3)	93	琉球大学	9	(1)
40	福井大学	10	(2)	94	政策研究大学院大学	1	(0)
41	福井医科大学	1	(0)	95	北陸先端科学技術大学院大学	4	(0)
42	山梨大学	4	(1)	96	奈良先端科学技術大学院大学	0	(0)
43	信州大学	12	(3)	97	総合研究大学院大学	0	(0)
44	岐阜大学	8	(1)	98	筑波技術短期大学	2	(0)
45	静岡大学	11	(2)	99	高岡短期大学	3	(0)
46	浜松医科大学	0	(0)	100	宇宙科学研究所	0	(0)
47	名古屋大学	12	(3)	101	統計数理研究所	0	(0)
48	愛知教育大学	6	(1)	102	国際日本文化センター	5	(1)
49	名古屋工業大学	6	(1)	103	核融合科学研究所	1	(0)
50	豊橋技術科学大学	3	(0)	104	岡崎国立共同研究機構	1	(0)
51	三重大学	8	(1)	105	高エネルギー加速器研究機構	4	(0)
52	滋賀大学	2	(0)	106	国立情報学研究所	5	(2)
53	滋賀医科大学	2	(1)	107	国立民族学博物館	2	(1)
54	京都大学	22	(3)	108	メディアア-教育開発センター	2	(2)
				合計		717	(132)

公立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無任期採用は、総数276人中の184人で66.7%を示しており、これは国立大学の47.4%に比べてやや良好である。とはいえ、前年度の採用264人中の無任期174人、65.9%に比べると、僅かに0.8%の改善になっている。これは公立大学が後述の「大学教員任期法」の影響を受けたものと推測される。

総合して中国・台湾人、韓朝鮮人などのアジア人教員が増加していることは、善隣友好好ましいことであるが、国立大学が自主的に任期をなくして外国人研究者を平等に処遇するよう強く要請したい。

#### 4. 大学教員「任期」制の現状と課題

国立大学は2004年4月から国立大学法人化が成立して、国の一機関ではなく、教職員も公務員でなくなった。72年から定住外国人の国公立大学教員任用運動を進めてきた当事者として、「国籍のかべ」が取り払われて外国人の採用が増える可能性が高まることは歓迎したい。しかし、もう一つの差別的な「心のかべ」がなくなる保証はどこにもない。それは日本人の心のあり方、国際性いかんによるからだ。

ここで、とりわけ大きな問題になっている「任期」制についてふれておきたい。外国人教員に対する不公平な「任期」行政は、いずれ日本人の身の上にもふりかかる火の粉の前例になることは、かねてより筆者が警告していたとおりに推移した。自民党文教族の動向を早くも察知した定住外国人側は、早くから外国人教員に対する任期反対に関して共闘態勢を願っていたが、日本人の大勢はほとんど無関心で実現しなかった。

こうして1997年6月、日本人教員全体に対する「大学教員任期法」(正式には「大学の教員等の任期に関する法律」)が成立、公布されたのである。日本人教授たちは、総じて任期反対の論調にあったが、辛うじて同法の任期制が、大学側の選択に委ねることになったので、当初は一応、愁眉を開くことになったようである。国会の衆・参両院における「附帯決議」に、「任期制の導入によって、学問の

自由及び大学の自治の尊重を担保している教員の身分保障の精神が損なわれることがないように十分配慮するとともに、いやしくも大学に対して、任期制の導入を当該大学の教育研究支援の条件とする等の誘導の干渉は一切行わないこと」が明示されたのである。しかし、外堀はすでに埋められ、じわじわと大学当局をして任期制を実効あらしめるようになっていく。国公立大学の場合には、とりわけ「財政誘導」という手段で攻略されることが多くなるだろう。

少子化の影響は、2007年から大学入学志願者の全入学時代をもたらし、学生の争奪戦が予想される。そのための競争原理の導入と並行される大学院や学部の新設への規制緩和、株式会社立大学等の多様化に伴い、大学教育の目的も拡散化を余儀なくされ、運営上の拙劣により赤字構造への突入など、財政基盤の弱い大学の倒産事例も顕在化しかねなくなるだろう。

この「選択的任期制」は、1996年10月に出された大学審議会答申「大学教員の任期制について 大学における教育研究の活性化のために」によって具体化されたものである<sup>17)</sup>。はたして任期制によって教育研究の「活性化」がはかれるのかどうか、それ以前に「活性化」とは何を意味するのか、また大学教員の「流動性」とは何か、など論究すべき課題は多い。少なくとも、日本人の任期制と外国人の「任期」制の異同性とか、なぜ外国人のみに先行して「任期」制を導入したのかななどの疑問は多い。

筆者はとりあえず、グローバル時代といわれる今日、学術の国際交流のみならず、民際外交にも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外国人教員の実情を日本人がしっかり把握したうえで、「外国人教員にのみ任期を強要する国立大学の任期規則を、東京大学の規則を範として改正し、日本人と同じ土俵に戻して任期間問題を再検討するなどの公平な措置を訴えた」のである<sup>18)</sup>。けだし、外国人にのみ任期をつけて当然だとする国立大学等の差別的体質は、先進国の大学にあるまじき、救いがたいものといわざるをえないからである。

一方、大学の「活性化」と「任期制」は表裏一体のように考えられているが、大学運営の活性化と研究上の活性化は必ずしも同一基準では考えられない。とりわけ基礎研究の分野における評価は難しく、短期的な任期内での成果が期し難

〈第3表〉公立大学外国人教員機関別任用状況

(2003年5月1日 現在)

大学名	教授	特任教授	助教授	講師	助手	計
札幌医大	1			1		2
青森保健大	2(2)			3(2)		5(4)
青森公立大	1(1)		2(2)	5(5)		8(8)
岩手県立大	4(4)		7(7)	2(2)		13(13)
宮城大	2					2
秋田県立大	2		11(2)	1		14(2)
会津大	9(8)		13(10)	15(11)		38(30)
茨城医療大	1(1)			1(1)		2(2)
群馬女大				1		1
前橋工大	1(1)		1(1)			2(2)
東京都大	4(3)		6(5)	1		11(8)
神奈川保大	1					1
横浜市立大	3(3)		5(5)			10(10)
富山県立大			1(1)			1(1)
福井県立大	5(5)	1	2(2)	1(1)		9(8)
都留文科大			1			1
長野看護大	1					1
情報科学芸術大学院大学			3(3)			3(3)
静岡県立大			3(3)	1(1)		5(5)
愛知県立大	1		3			5
名古屋市立大				1		1
滋賀県立大	2(2)		1(1)	1		4(3)
京都医大	1					1
京都芸術大	1		2			3
大阪府立大	1		2	2		13(8)
大阪女大	1			1		2
大阪看護大	1			1		2
大阪市立大	4(3)		6(4)	5(3)		15(10)
奈良医大						4(4)
神戸商大	1(1)		1(1)	1(1)		4(4)
姫路工大			3(3)	1(1)		4(4)
神戸市立外大	2(2)		7(7)			9(9)
和歌山医大						※1(1)
島根県立大	2		5	2		9
岡山県立大			2(2)			2(2)
広島県立大			2	1		3
広島市立大	6(6)		4(4)	1(1)		11(11)
山口県立大	3(3)		3(3)	1(1)		7(7)
下関市立大			1(1)			1(1)
高知女大			1			1
福岡女大			1			1
福岡県立大			1	2		3
北九州大	4(4)		11(7)	4		19(11)
大分看護科学大	1			1		2
長崎県立大	1(1)					12(1)
シーボルト大	4(4)					4(4)
熊本県立大			5	2		7
宮崎看護大			1(1)			1(1)
宮崎公立大	3(3)		1(1)			4(4)
沖縄芸大	3(3)					3(3)
	79(60)	1	118(76)	59(30)	18(17)	276(184)

○ 本表では公大協調へに徐の調査数値を合算した。

○ ※1が匿名の回答なし。( )内は無任期教員数。

い側面も否定し難い。日本社会全体の任期制＝強制的な労働市場の流動化が未実現の現状において、研究職だけの任期制による流動化がうまく機能する保証は、外国人教員評価の「不公平性」や「人事政策」ひとつみても、いまのところ見出し難いといえよう。

外国人教員任用運動を始めて31年、「外国人教員任用法」を獲得して20年の節目にあたるのが2002年であった。その21年目にあたる国立大学の外国人教員集計によれば、助手を含めて1,207人が採用されている。これを地域別にみれば、アジア系が全体の60%以上を占め、欧米系の約36%をしっているのは、経済活動のみならず学术交流も「アジアの時代」に突入したからだといえよう(19)。

一方、公立大学協会の最新資料によれば、276人の外国人教員が任用されており、国公立大学合計では、1,483人にのぼる。助手の集計洩れを考慮すれば、約1,500人が任用されているとみてよいだろう。このような動向が、各地方自治体の外国人公務員採用に波及した影響も見逃せない。これまで外国人は公務員になれないという「当然の法理」は、事実上ほぼ破綻したといえる。

「外国人教員任用法」は、国籍のいかんを問わず優れた人材を教授などに任用することを認めた法律だったが、その大きな問題の一つは、大学側による任期つき採用にあった。公立大学での33.3%に対し、国立大学では約53%が任期付で問題が残る。もともと「外国人教員任用法」では任期を強制してはおらず、問題は日本人教授の「心のかべ」にある。国公立大学が自主的に決定した外国人だけの差別的な任期規定を撤廃し、日本人と平等な土俵で新たに任期間問題を考え直すべきである。任期規定の模範は東京大学にある。その条文の第2条には外国人を、「任期を定めなくて任用することができる」とうたっており、これまでも無任期の外国人教授が比較的多く実現しているからである(20)。

## 5. むすび—外国人教員1万人採用で活力と国際化を

ここで国立大学法人の発足にあたり、将来の展望をともに考えてみたい。もとより大学の経営は、各大学の特色ある教育、良質の教職員と、学生に魅力的



な研究教育の多様性、経営戦略が必要であろう。そのための高い識見と将来を見通す先見性を備えた経営者学長が望まれる。国公立大学のみならず、私立大学も競争の渦の中にあり、国家財政からの資金だけでなく、地方自治体や民間企業との共同事業による地域社会の啓発と活性化によっても資金を確保する戦略が展開されることになろう。

大学の改革にも、経営の手腕を十分に発揮できるプロが歓迎される時代がきたといえる。教育関連企業が、大学教授と共同してベンチャー企業をおこし、大学向けの教育管理システムを開発・販売する会社も生まれてきた(21)。

いま、わたしの脳にひらめくのは、日産自動車(株)を再建したカルロス・ゴーン社長の手腕である。国公立大学も「ゴーン学長」並みの外国人を迎えて活性化すべきではないか。ひと昔前の学閥、純血主義や国籍にこだわってはいは、経営と人事の総責任者としての学長はつとまらない。そのうえ、有能な「外国人教員一万人採用」(22)の私の構想は、大学の活性化はもとより、日本人の国際感覚を高め、日本の真の国際化を推進し、飛躍させるだろう。

私が1996年にウィーン大学客員教授だったころ、オーストリアの正教授の25%、客員教授の54% が外国人だったことに驚いた。国籍を超越した発想で、人口800万人余りの小さな国が、18人ものノーベル賞受賞者を出した秘訣がそこにあると思った(23)。

いまひとつ。世界人口の半分を占める女性の採用を増やすことである。とりあえず、各大学教員の30%採用を目標としてはどうか。前述のように、珍しく文科省の2002年資料では、国立大学の外国人女性教員の任用状況を初めて公表した。専任教員は125人で、任用全体の18%だった。2003年資料によれば女性教員は132人に少し増えた。前述のように採用の多い大学でも僅か5人で、東北大、筑波大、東京大、愛媛大がそうである。以下、新潟大、神戸大、岡山大などが続いているが、今後も採用増が望ましい。有能な女性の研究者と経営者が出現して、大学改革をなし遂げる日も、そう遠くはないだろう。

終わりに、もはや旧聞に属するが、阪神タイガースが首位を独走し、セリーグで優勝した。不振のどん底にあった球団が、星野前監督のリーダーシップもさることながら、定住外国人や一般外国人選手の移入人事を敢行して優勝に導い

た、その経営陣も評価したい。大学にも行動力があり、先見性もある「ゴーン学長」を移入すれば、異質な発想のもとに独創性が発揮され、特色ある大学として飛躍的に発展するだろう。日本人はもはや国籍にこだわる時代がすぎたことを認識すべき時である<sup>24)</sup>。

## 主

- 1) 日高六郎・徐竜達編(1980)『大学の国際化と外国人教員』, 第三文明社, まえがき。
- 2) 日高六郎・徐竜達編, 前掲書, 288~289頁。
- 3) 徐竜達(1993)『国公立大学外国人教員任用の現状と課題』, 徐竜達先生還暦記念委員会編『アジア市民と韓朝鮮人』日本評論社, 488~491頁。
- 4) 日高六郎・徐竜達編, 前掲書, 291~293頁に要望書掲載。
- 5) その間の詳細については次の文献を参照。
  - ① 徐竜達(2003)『国公立大学外国人教員任用の現状と展望』, 徐竜達編著『21世紀韓朝鮮人の共生ビジョン中央アジア・ロシア・日本の韓朝鮮人問題』(権菴・徐竜達先生古希記念論集), 日本評論社, 283~307頁。
  - ② 徐竜達(2000)『外国人教員任用運動からみた共生社会への展望』, 徐竜達・遠山淳・橋内武編著『多文化共生社会への展望』, 日本評論社, 220~245頁。
  - ③ 徐竜達(2003)『外国人教員任用に関する運動日誌』, 徐編『ロシアの韓朝鮮人問題と日本』, 国際在日韓国朝鮮人研究会, 11月, 87~95頁。日高・徐編(1980), 前掲書(絶版), 330~347頁より転載。
- 6) 周達生(2003)『在日中国人からの一言』, 徐編『ロシアの韓朝鮮人問題と日本』, 前掲書, 80頁を参照。ここで周氏は, 『外国人教員任用法』が在日韓朝鮮人の長年にわたる努力の結晶であると述懐している。
- 7) 徐竜達(1986)『大学の国際化と『外国人教員任用法』』, 『大学研究ノート』(広島大学大学教育研究センター発行)第67号, 8月, 87~95頁参照(85年度センター研究員集会における徐の報告論文)。
- 8) 徐竜達(1984)『外国人教員任用法の機能と課題』, 『桃山学院大学経済経営論集』第26巻第2号, 10月, 61~64頁。
- 9) 沢田マルガレーテ(1985)『退歩した国際性筑波大学の場合』, 『中央公論』8月号, 100~107頁。
- 10) 田中宏(1980)『大学は国際化の扉を開きうるか』, 日高・徐編, 前掲書, 73頁以下を参照。アイヴァン・ホール(1995)『日本の国立大学にあるアパルトヘイト使い捨てられる外国人教員』, 『Ronza』5月号, 50頁以下を参照。
- 11) 『朝日新聞』熊本版(1998)『徐教授招きシンポ』, 『熊本日々新聞』(1998)『外国人教員待遇改善を』, いずれも12月13日付, および, 熊本県立大学外国人教員を守る会(1998, 12月)『大学の開国を問う』(パンフレット), 北九州ユニオン。
- 12) 公立大学協会基本問題委員会(1979)『外国人教員問題について』, 5月, 日高・徐, 前掲書, 308~311頁を参照。
- 13) 1953年6月29日付の人事院事務総長の(法律でない)見解をさす。『公務員に関する当然の法理として, 公権力の行使または国家意思の形成への参画にたずさわる公務員となるためには, 日本国籍を必要とするとの解釈が行われている。』(人事院任用局監修, 『任免関係法令集』1978年版,

- 241頁。)
- 14) 徐竜達(2003)「大学教授の体質改善」『奈良新聞』4月16日付文化欄を参照。
- 15) 岡崎勝彦(2001)「地方参政権の本質と被選挙権住民自治に即して」, 徐竜達編『定住外国人の被選挙権への展望』『国際韓朝研』, 5月, 18頁。  
同稿(2001)「定住外国人と地方被選挙権保障の法理」『法律時報』第73巻第10号, 9月, 85~86頁。
- 16) 徐竜達(2001)「定住外国人の参政権と『アジア市民』社会「国民」と「住民」の正しい解釈を求めて」, 『法律時報』第73巻第10号, 9月, 78~79頁。  
同上の加筆論稿は、徐編著(2003)『21世紀韓朝鮮人の共生ビジョン』日本評論社, 137~152頁に掲載された。
- 17) 1996年10月29日付「朝日」「毎日」「日経」などの各紙は、任期制度運用の生命ともいえる業績評価の難しさ、身分保障対策、教育・研究の活性化方策などの問題点を論評している。また、国立大法人化の決定後は、政府による大学予算削減、大学の統廃合、産学共同事業、大学運営の合理化などが大きな課題になっている。  
Cf. Suh, Yong-Dal(1998, April 2) 'Equal footing needed for foreign teachers', Asahi Evening News, Opinion.
- 18) 徐竜達(1999)「外国人教員の任期撤廃求む」『毎日新聞』5月17日付「オピニオン・ワイド」欄。  
本稿は次の英文でも紹介された。  
Suh, Yong-Dal(1999, May 22) 'Universities should welcome foreigners', Mainichi Daily News, Opinion.
- 19) 徐竜達(2003)「定住外国人の参政権と『アジア市民』社会」, 徐編著『21世紀韓朝鮮人の共生ビジョン』前掲書, 144~148頁を参照。
- 20) 徐竜達(1999)「外国人教員と日本人教員の任期問題について」『関西教授会連合』No.97・98 合併号, 国庫助成に関する私大教授会連絡協議会, 2月刊を参照。  
徐竜達(1984)「定住外国人教授は任期なしに、模範的な東大の任用規則」『毎日新聞』2月29日付夕刊「文化欄」。
- 21) 『日本経済新聞』(大阪本社版)2004年9月1日付35面「VB 2 社と新会社大学授業管理システムで」を参照。  
なお、「企業の大学運営とは何か」など羽田教授の論旨も傾聴に値する。  
羽田貴史(2004)「国立大学法人制度をめぐる論点整理」, 広島大学高等教育研究開発センター編『大学運営の構造改革』高等教育研究叢書80, 67~73頁。
- 22) 徐竜達(2003)「国立大学にゴーン学長を外国人教員1万人で活力と国際化」, 『朝日新聞』8月29日付(夕刊)文化欄。
- 23) 徐竜達(1995)「オーストラリアが示す国際的の道」『朝日新聞』7月28日付(夕刊)文化欄。  
徐竜達(2003)前掲『21世紀韓朝鮮人の共生ビジョン』, 635~637頁に転載。
- 24) 徐竜達(1986)『留学生10万人計画』への提言変えられるか 日本人の文化的性格』『毎日新聞』12月19日付(夕刊)文化欄。  
徐竜達(2003)「外国人教員の任用と大学国際化への課題」『国際文化論集』, 桃山学院大学総合研究所, 第29号, 280頁。

Abstract

Appointing Able Foreign Nationals to Japanese Universities: towards  
Increased Internationalization

SUH Yong-Dal\*

I have lived for 62 years as a taxpayer in Osaka, Japan, but I have no citizenship. As a foreigner, it was not possible to apply for enrollment at a national or public university after the 2nd World War till 1982, even though no legal grounds forbade it. After becoming the first formal lecturer in a 4th year university in 1963, I organized a civic movement group in October 1972, and struggled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for a long ten years.

The Law Concerning the Appointment of Foreign Nationals as Faculty Members a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was established in August 20, 1982. The path of employment was cultivated for foreign nationals.

P. F. Kornicki, a U.K. national, 34 years old, became the first appointment at Kyoto University. He was given a 2 year appointment but after one year, he returned to U.K., because he was not guaranteed renewal of this assistant professorship.

According to the latest statistics compi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717 foreign lecturers were employed full time at 108 national institutions in Japan. The top five employers are Tokyo Univ. with 49 lecturers, Tohoku Univ. with 48, Kyushu Univ. with 33, Tsukuba Univ. with 31, and Kyoto Univ. with 22. By nationality, faculty members from China and Taiwan topped the list with 246, followed by 153 Koreans and 110 Americans. From the U.K. there were 39, Germany 34, Australia 19, Canada 16, and France 12.

It was regrettable that the advisory council failed to pay serious attention to the circumstances of foreign lectures who were playing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international exchanges in the academic field, but in public diplomacy over all. It was also said that the council made no attempt to solicit foreign

---

\* Professor Emeritus, St. Andrew's University

faculty member's view when it deliberated on the fixed term system.

An exclusive or discriminative problem occurring with employment of foreign faculty members is that many universities force them to accept fixed term appointments— a practice that has not been applied to their Japanese colleagues. This can be seen as evidence of the exclusive nature and racism in Japanese society. In Japan, there are no laws which ban racism or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of foreigners. Can we call this an internationalized country?

At present, 377 (52.6%) foreign lecturers at national universities work on contracts limited to three years or so,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establish a stable environment for research and education.

In spite of discriminative circumstances, and commendable when the general trend is moving in the other direction, the best three schools with no term limits are Tokyo University with 36 such faculty members, Tsukuba University with 26, and Tohoku University with 20. The steps taken by these three schools are all aimed at furthering their internationalization in the 21st century.

We, the “permanent alien residents” (Teiju Gaikokujin), think that the barrier is not a legal one, rather it is an exclusive, islander mentality, common to the Prime Minister and Governor of Tokyo. Japanese academics are too narrow minded except for a conscientious minority.

The purpose of the Foreign Nationals Lecturers Appointment Law 1982 was to internationalize Japanese universities,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 at the academic level, an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permanent alien residents research workers in Japan.

I dare to ask all Japanese universities to emulate Tokyo, Tsukuba, Tohoku and Kobe University where foreign lecturers can be appointed for contracts that are not term-limited. Japanese academics should first revise their internal regulations to abolish the fixed terms for existing foreign lecturers so as to put them on the same footing as their Japanese colleagues. Next, the universities should solicit views from those who have worked for fixed terms and see whether their views will prove useful in the debate on whether or not to introduce a fixed term system.

Japan's prospects as an advanced nation in the 21st century depend upon how well it can rise above the barriers of distorted nationalism to welcome

foreigners into its midst. Universities must do the same in order to become truly autonomous and internationally competitive in the pursuit of knowledge. The changes I suggest will no doubt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Japan and the efforts to work out a national vision for the 21st century, not to mention the revitalization of Japanese universities. If permanent alien residents can be recognized to have a right to be appointed to universities equally with Japanese nationals, I am confident that Japanese society will strengthen its foundation for becoming a more respectable, international state.